

하나 외화 양도성예금증서(통장식) 특약 개정 전후 대비표

| 개 정 전   | 개 정 후  | 비 고  |
|---|--|--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하나 외화 양도성예금증서(통장식) 특약</u></p> <p>제1조 약관의 적용<br/>『하나 외화 양도성예금증서(통장식)』 (이하 “이 등록발행 양도성 예금증서”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<u>『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』</u>을 적용합니다.</p> <p>제2조~제12조 (생략)</p> <p>제13조<br/>위 특약의 변경 시 변경사유, 변경내용 등을 변경시행일 1개월 전 1개월 동안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고시합니다.<br/>단,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 시에는 <u>예금거래 기본약관</u> 제21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에게 알려드립니다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부칙&gt;<br/>본 약관은 <u>2015년 7월 10일부터</u> 가입하는 계좌에 대해서 적용하며, 가입자는 기존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.</p> 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하나 외화 양도성예금증서(통장식) 특약 (구 하나은행)</u></p> <p>제1조 약관의 적용<br/>『하나 외화 양도성예금증서(통장식)』 (이하 “이 등록발행 양도성 예금증서”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<u>『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(구 하나은행)』</u>을 적용합니다.</p> <p>제2조~제12조 (생략)</p> <p>제13조<br/>위 특약의 변경 시 변경사유, 변경내용 등을 변경시행일 1개월 전 1개월 동안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고시합니다.<br/>단,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 시에는 <u>예금거래 기본약관(구 하나은행)</u> 제21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에게 알려드립니다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부칙&gt;<br/>본 약관은 <u>2015년 9월 1일부터</u> 가입하는 계좌에 대해서 적용하며, 가입자는 기존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.</p> | <p>소멸법인명칭<br/>부기</p> <p>약관명에<br/>소멸법인 명<br/>부기</p> <p>약관명에 소멸<br/>법인 명칭부기</p> <p>적용일자 변경</p> |